

『러시아 연해주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과업내용서

2020. 06.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목 차 |||

I. 과업개요	1
II. 과업내용	2
III. 일반사항	10
IV. 과업 성과품	16
V. 경비정산	17
VI. 과업예정 공정표	17

I. 과업개요

1. 과업명 : 러시아 연해주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2. 과업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하 KIND)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2020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 지원대상으로 러시아 연해주 정부가 신청한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사업이 선정됨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과 개발에 협력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일부 용역자금을 분담, KIND와 LH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 및 감독할 예정
-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이자 신북방협력의 해를 맞아 실질적인 양국 교류의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며 불쇼이카멘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관심 아래 즈베즈다 조선소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
- 이러한 배경에서 G2G 기반으로 시작된 본 과업은 G2B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총괄계획 및 검토로서, 연해주 지역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개발구상,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 실현방안 도출을 통해 추후 국내외 민/관이 협력하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러시아 사업 성공모델을 수립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과업범위	○ ‘Ⅱ. 과업내용’을 과업범위로 한다
예산	○ 60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과업기간	○ 과업 착수일로부터 270일(9개월)

4. 공간적 범위

- 불쇼이카멘 및 인접 주요도시(필요시 연계 방안 등은 연해주 전체 포함)
- * 블라디보스톡(331.2km²), 루스키 섬(97.6km²), 아르쑀(506.4km²), 불쇼이카멘(40km²), 나테진스카야(ASEZ 지역등을 포함하는 연해주 남부 지역, 400km²) 총 1375.2km²

II. 과업내용

1. 적용범위 및 기본방향

1.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러시아 연해주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에 적용한다.

1.2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1.2.1 러시아 국가개발계획, 기존 연해주 지역개발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해주 지역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개발구상 수행

1.2.2 대상지의 물리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시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대비하고 인근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토지이용계획, 스마트 공공 및 기반시설 개발계획 등 부문별 개발계획 수립

1.2.3 불쇼이카멘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스마트 서비스의 제공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1.2.4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의 실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 사업구조, 총사업비 등 관련요소 조사·분석

1.2.3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 전문기업 및 전문가를 적극 활용

2. 주요 과업내용

러시아 연해주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2.1 연해주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2.1.1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2.1.2 경제 및 부동산 시장 조사

2.1.3 토지이용 현황 조사

2.1.4 기반시설 현황 및 잠재수요 조사

2.1.5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법률 및 개발계획 조사, 분석, 관련기관 협의

- 2.1.6 개발지 현황 기록화(개발전 모습 촬영, 주민 인터뷰 등)
- 2.1.7 개발시 유용 가능한 문화 자산 요소 도출 및 적용 방안 제시

2.2 불쇼이카멘 및 인근지역 지역개발구상

- 2.2.1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 수립
- 2.2.2 지역별 개발구상 및 지역특화개발방안 수립
- 2.2.3 토지이용구상
- 2.2.4 주택단지 개발 기본구상
- 2.2.5 기반시설 구축방안

2.3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 2.3.1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개발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비전 설정
- 2.3.2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도출
- 2.3.3 스마트시티 기본 및 특화 서비스 계획
- 2.3.4 스마트 공공 시설 및 재난 방지시스템 개발계획
- 2.3.5 도입된 스마트 기술의 종합유지관리 시스템 개발계획
- 2.3.6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구축계획
- 2.3.7 스마트솔루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수익모델 제안
- 2.3.8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검토

2.4 사업 실행방안 및 지원방안 수립

- 2.4.1 인허가 등 법적 승인절차를 고려한 프로젝트 로드맵 작성
- 2.4.2 PPP 등 사업구조 및 사업구조별 역할 검토
- 2.4.3 총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 2.4.4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반 법률/제도 및 사례 검토

3. 일반지침

- 3.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해외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서 사업조사·발굴, 개발여건분석, 계획수립,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업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2 수급인은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3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3.1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중요한 사항
 - 3.3.2 관계기관 협의내용
 - 3.3.3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3.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 및 수급인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를 통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3.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행하여 성과물의 전문성 및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회의 시행 시 전문가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3.6 과업내용의 합리적인 평가와 진단을 도모하고, 편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감독관이 참여하는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3.7 과업과정에서 성과물의 효율적인 이해 및 전달을 위하여, 최신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성과물에 반영한다.
- 3.8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3.8.1 과업대상국가 정부기관 공식 통계자료
 - 3.8.2 국제기구 공식 통계자료
 - 3.8.3 과업대상국가 관할 지자체 또는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 3.8.4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3.8.5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지조사 결과활용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
- 3.9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 시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요청한 성과품 및 최종성과품은 사전검사 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3.10 성과품 및 보고서,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은 국문과 러시아어, 필요시 영문로 작성하여야 하며 통번역 비용은 계약금액내 수급인이 부담한다.
- 3.11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지 업체를 활용하여 현지 최신자료를 분석 및 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12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단계별 과업성과품 작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승인 후 다음 단계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13 과업수행에 필수적인 각종장비, 소모품 등은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해외출장여비, 자문비용, 인쇄비 등 직접경비는 용역 준공 전 실비로 정산(예산내역서 범위내)하고 수급인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비용처리는 금지한다.
- 3.14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부 및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4. 세부지침

러시아 연해주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4.1 연해주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4.1.1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 국가 및 도시개황, 국토·지리 (위치, 면적, 기후, 지형, 부존자원 등)
- 불쇼이카멘 및 인근지역 지형, 하천 등 자연환경과 인구, 주택 등 인문환경 조사·분석
- 도시계획 관련 개발 제약사항 조사

4.1.2 경제 및 부동산 시장조사

- GDP, GRP, 환율, 고용, 민간투자 등의 경제현황, 지역별 주요 산업 및 산업현황 조사
- 주거, 상업, 산업 등 업종별 공급 및 수요분석
- 불쇼이카멘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지가 및 거래동향의 조사

4.1.3 토지이용현황 조사

- 불쇼이카멘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 도시공간의 기능과 물리적 특성 조사
- 문화재, 보전지역, 습지 등 개발 제약 조건 조사

4.1.4 기반시설 현황 및 잠재수요 조사

- 지역구상 및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인프라 현황 조사
- 대상지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잠재수요 조사

4.1.5 정부·지자체의 관련 정책, 법률 및 개발계획 조사, 분석, 관련기관 협의

- 국토·도시개발정책, 주택 건설 및 공급정책, 토지정책(토지보상, 외국인 토지사용 등), 사회·경제개발정책 등 주요 정책 조사
- 도시계획, 도시개발, 토지, 주택, 건설, 특별경제구역 등 관련 제도 검토
- 도시계획·개발, 주택건설·공급, 토지보상·수용 등의 개발 절차 분석
- 도시개발 관련 상위계획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 필요시 관련기관 협의

4.2 불쇼이카멘 및 인근지역 지역개발구상

4.2.1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 수립

- 연해주지역 중·장기적 개발 목표 및 지표 설정을 통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4.2.2 지역개발구상 및 지역특화개발방안 수립

- 지역현황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 방향, 비전, 목표 및 평가지표에 부합되는 지역개발구상
- 개발구상은 대상지역의 개발규모 및 지표 설정, 규모 및 배분 계획, 도입시설 계획 연관산업 등을 포함
- 지역현황조사를 고려,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역별 특성화 개발 전략 및 컨셉 수립
- 인구와 산업 등 관련지표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발축, 교통축, 녹지축 등과 상호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수립

4.2.3 토지이용구상

- 현지 여건에 맞는 토지이용 지표 및 수립기준 설정

- 현지 토지개발 법제를 고려하여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구상안 작성
- 사업대상지의 물리적, 지리적, 역사, 문화적 지역특성을 반영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
- 상위·관련계획, 수요조사·분석, 지형·지세, 지구경계, 적정면적, 기타 기존의 연구조사자료 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
- 불쇼이카멘 지역의 용도지역계획, 지역별 밀도계획 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4.2.4 주택단지 개발 기본구상

- 현지 여건에 맞는 주택단지 개발구상을 위한 지표 및 수립기준 설정
- 지역적 특성, 소득구조 및 선호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가능한 다양한 주택유형의 도입을 고려한 주택단지 개발 기본구상안 작성
- 가구 및 획지의 규모는 주택구매 수요 전망, 쾌적한 주거수준, 법적 규제사항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다양화
- 불쇼이카멘 지역의 주택호수밀도계획, 유형별 주택계획, 단지내 공원녹지계획 등을 포함하는 주택단지 개발계획 수립
- 공원녹지계획은 도시생활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 정적·동적 활동을 수용 가능한 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

4.2.5 기반시설 구축방안

- 상위계획, 기본계획, 지역여건, 도시연계 등을 고려한 기반시설 설치방향 제시
-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수립시 설치·유지관리비용의 최소화를 고려

4.3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4.3.1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개발의 기본방향, 계획의 목표 및 비전 설정

-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약 9km² 규모의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개발의 방향, 목표 및 비전 설정

4.3.2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 솔루션 도출

- 지역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조사를 통해 불쇼이카멘 시에 요구되는 스마트 솔루션 도출

4.3.3 스마트시티 기본 및 특화 서비스 계획

- 스마트시티로서의 기본적인 서비스 구축 및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해당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도출하고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생산·수집·가동·유통을 포함하는 계획 수립

4.3.4 스마트 공공시설 및 재난 방지시스템 개발계획

- 도로 등 주요시설을 고려하여 지능화된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이 포함된 구축계획 수립
- 지능화된 공공시설의 구축을 위한 시설 종류, 규모, 위치, 배치계획을 수립
- 불쇼이카멘 기후환경, 기후변화, 도시여건 등을 고려 주요 재해에 대한 스마트 방재 시스템 도입계획 수립

4.3.5 도입된 스마트 기술의 종합유지관리 시스템 개발계획

-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기술, 스마트 공공 기반시설 등 도입된 스마트 기술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4.3.6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구축계획

-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구축,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4.3.7 스마트솔루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수익모델 제안

- 스마트솔루션 도입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선순환 수익모델의 제안

4.3.8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관련 법령, 제도 검토

- 스마트시티 건설과 관련된 연방·지방 정부의 법령 및 제도 검토

4.4 계획 실행방안 및 지원방안 수립

4.4.1 인허가 등 법적 승인절차를 고려한 프로젝트 로드맵 작성

- 상기 검토된 각종 법률, 제도 등을 고려, 로드맵 작성
- 주요 사업의 일정 및 연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프로젝트 로드맵은 인구계획, 인프라 공급계획, 계획인구, 목표연도의 설정을 포함

4.4.2 PPP 등 사업구조 및 사업구조별 역할 검토

- 현지 여건, 법률, 제도의 검토 및 사례조사를 통해 실제 불쇼이카멘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구조의 파악 및 해당사업에 적합한 사업구조의 수립

- 러시아 정부, 공공기관 및 현지 법인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사업구조 검토 및 협력사업시 역할분담 설정

4.4.3 총사업비, 사업수입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검토

- 총사업비, 사업수입 산정을 위한 근거확립을 통해 현금 유입, 유출과 관련 총사업비와 사업의 수입 산정
- 재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 수립한 사업구조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수립

4.4.4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반 법률/제도 및 사례 검토

- 외국인 투자와 관련 러시아 현지 법률/제도 및 사례 검토

4.5 성과품 작성 (IV. 과업 성과품 참조)

4.5.1 보고

- 착수 및 중간보고 : 차후 협의를 통해 착수 및 중간보고일 결정
- 최종보고 :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업종료 10일 전에 보고

4.5.2 성과품 제출

- 착수 및 중간보고서 : 국문 및 러시아어 본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발표자료
- 최종보고서 : 국문본 및 러시아어본 본 보고서, 요약 보고서, 발표자료, 자료집, 기타 전산파일 등

Ⅲ.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원칙

- 1.1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와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2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이 용역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1.3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여건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4 계약상대자는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분석 및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시 과업 분야별로 글로벌·로컬 전문기관에 하도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적용기준

- 2.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2 계약상대자는 수시 또는 최종 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해 인용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년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2.3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당시 기 반영된 최신기술 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2.4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참여인력

- 3.1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3.2 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기술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관의 요구로 변경할 경우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 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 변경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 가능한 과업수행 인력의 비율(예시: 30% 이내)은 감독관이 정한다.
- 3.3 현지조사, 사업로드맵, 사업구조, 법률조사 및 검토 등은 내실있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현지업체(로컬)와 하도급 계약 등을 통한 협업을 검토해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4.1 이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예정공정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2)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 5.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3)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1 착수신고서 제출

-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착수계로 제출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착수신고서
 - 나)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다) 과업수행조직표
 - 라) 세부공정계획서
 - 마) 인력투입계획서
 - 바)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사)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3) 계약상대자는 상기 각항의 착수신고 서류를 착수 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은 착수신고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현지 정부의 신청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현지 정부에 제공하는 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착수 보고회는 현지에서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문 및 러시아어 착수보고서 및 발표자료 포함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단 COVID-19로 현지 수행 제한시 감독관 및 현지정부와 협의하여 적정 보고회 추진방안 마련

6.2 보고 및 인계·인수

- 1) 용역의 성과보고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시행하며, 성과 보고 시 감독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기간 중 원활한 업무진행 및 협의를 위하여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대상국 정부가 요청한 용역인 만큼 모든 보고는 대상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COVID-19 등 상황 고려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 5) 착수/중간/최종 보고·발표, 제 3자 공동 방문 또는 협의, 월별 추진상황 및 계획보고 등에 의하여 대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간 매주 또는 격주로(과업추진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추진현황 및 계획수립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활발히 소통하고 과업수행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

6.3 자문

- 1) 과업수행 중 관계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결과에 제시된 의견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7. 용역감독의 업무

- 7.2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8.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2)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감독관의 객관적이고 합당한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 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역대가의 지급

본 용역의 대가는 계약문서에 기술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10.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10.1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교통부 및 발주기관 (KIND, LH)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0.2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10.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0.4 계약 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계약당사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11. 보안 사항

- 11.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감독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11.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및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제반 서류를 제출한다.
- 11.3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착수 시 제출한 동급이상의 기술자(혹은 연구원)로 대체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11.4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 11.5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1.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11.7 발주기관의 활동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세미나, 워크숍, 논문 등의 활동에 본 과업내용이 사용·응용·인용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 11.8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원지·파지·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 11.9 매월별 참여기술자에게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11.10 기타 용역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관계규정 및 LH의 보안업무 실무편람 등을 따른다.

12. 사후관리

12.1 과업완료 후에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즉시 보완하거나 수정제출 하여야 한다.

12.2 과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 요청시 성과내용의 설명·보고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IV. 과업 성과품

1.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보고서와 도면은 가능한 한 전산화하여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수행자가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3.1 주요 보고서 및 도면 (USB 1식 포함)

구분	주요 성과물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서 (과업수행계획) (본보고서 및 발표자료 (국문, 러시아어)) 	
중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지역개발구상(안) (국문, 러시아어) •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안) (국문, 러시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스케일 : 추후 협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지역개발구상 (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국문, 러시아어)) •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국문, 러시아어)) • 최종보고 발표자료 (국문, 러시아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스케일 : 추후 협의 • 요약보고서 10부 • 최종보고서 10부
현지기관 제출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지역개발구상 보고서 (러시아 정부 제출 도서) •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고서 (러시아 정부 제출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기관 협의 후 요청부수 반영 • 러시아어
기타 성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관련자료 1식 •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조감도 1식 •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등 	

※ 감독관과 협의 후 변경 가능

3.2 토지이용구상도 등 관련도면, 보고용 판넬, 보고자료(Power Point) 1식

3.3 기타 현지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기관 요구자료 1식

3.3.1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3.3.2 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각종 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전산화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3.3.3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3.4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 경비정산

1. 용역비 가운데 경비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내역은 정산내역서(지출내역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확인 후 정산금액이 계약금액(경비성 비용)보다 적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경비세목별로 증감사항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세목을 합산한 후 경비전체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VI. 과업예정 공정표

과업내용 \ 공정(개월)	1	2	3	4	5	6	7	8	9
1. 연해주 지역현황 조사 및 분석									
2. 불쇼이카멘 및 인근지역 지역개발구상									
3. 불쇼이카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4. 계획 실행방안 및 지원방안 수립									
5.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관련 자료 작성									
주요 일정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 상기 일정은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변동가능